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반려동물 복지기본법안

검 토 보 고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856호)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이 현 중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5
1. 법률 제정의 필요성	5
2. 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7
3. 주요 항목별 검토	14
(1) 목적 및 정의	14
(2) 반려동물복지의 기본이념 및 국가·국민의 책무 규정	17
(3) 반려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21
(4) 반려동물의 양육 및 관리	26
(5)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8
(6) 반려동물 영업 허가·등록	33
(7) 반려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신고 및 교육	41
(8) 반려동물 영업 관리체계	46
(9) 보칙 및 벌칙	50
(10) 부칙	55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임호선의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5. 12. 4.

다. 회 부 일 : 2025. 12.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4년 기준으로 전국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591만 가구로 반려견과 반려묘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비혼가구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이에 따른 반려동물 연관산업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반려동물 양육 증가에 따라 동물복지 관심도가 높아지고 전반적인 사회인식도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반려동물 학대 및 유실·유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동물복지 인식격차 등으로 인한 비반려인과의 갈등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동물보호 중심 정책에서 적극적 복지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보호에 필요한 안전망 강화와 반려동물복지 인력 및 조직 보강 등의 인프라 확충, 반려문화 확산 및

연관산업 육성 등의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으므로 반려동물에 대한 차별화된 법률을 제정하여 동물복지 선진국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반려동물의 생애 전반에 걸친 보호와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을 생명과 존중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2조).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 다. 반려동물의 적절한 양육·관리 의무와 반려동물의 학대 금지, 반려동물의 의료제도 개선, 반려동물 소유자의 사전의무교육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 라.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 반려동물에 대한 훈련 및 반려동물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를 도입하고 자격시험과 결격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 마.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허가·등록·영업승계 등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영업자의 교육의무, 과징금의 부과 및 영업장의 폐쇄 등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37조까지).
-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동물복지 인식을 제고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안 제38조).

IV. 검토의견

1. 법률 제정의 필요성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방지, 동물의 적절한 보호 및 관리 등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급속한 증가에 비추어 볼 때, 반려동물의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 증진을 포괄적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음.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 수요는 사육·관리, 의료, 행동교정, 유통·영업 관리, 교육·홍보, 갈등 조정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책의 체계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반려동물 복지와 관련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장기 정책 방향, 전문 인력 양성 및 산업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법적 근거는 미흡한 상황임.

이에 반려동물을 생명과 존중의 대상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반려동물 복지¹⁾를 국가 정책의 하나로 체계화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반려동물복지기본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반려동물 정책을 보호 중심에서 복지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

1) 반려동물 복지는 동물을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행복을 추구하는 주체로 전제하며, 생존의 차원을 넘어 고통을 최소화하고 안락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423호(2025. 11. 5.), 2페이지)

회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입법적 요구가 존재함.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보호 중심 정책에서 복지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다만, 현행 「동물보호법」이 동물 보호·복지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체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 분야를 대상으로 별도의 기본법을 추가로 제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아울러 현재 「동물복지기본법」(가칭)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책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법이 병존할 경우 법체계의 명확성과 체계적 일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동물복지기본법」과 제정안(「반려동물복지기본법」)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다만, 「동물복지기본법」의 제정 시기와 구체적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수요와 행정 경험이 비교적 축적된 반려동물 분야를 대상으로 복지 정책을 선제적으로 설계·운영해 보는 것은 단계적·과도기적 법제 차원에서 일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 특히 반려동물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로서 정책 효과가 비교적 직접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복지 중심 정책 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해 볼 필요성도 인정됨.

이러한 접근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제정안이 현행 「동물보호법」과의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기본법으로서의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장차 포괄적인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시 관련 제도로 통합·확장될 수 있도록 법체계상 연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체계적 설계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2. 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

제정안은 반려동물의 생애 전반에 걸친 보호와 복지 향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총 4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려동물을 생명과 존중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제정안은 반려동물 복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총 7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첫째, 총칙에서 법률의 목적, 용어의 정의, 기본이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음(제1장).

둘째, 반려동물복지종합계획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반려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심의·자문하기 위한 반려동물복지위원회 및 시·도 반려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제2장).

셋째, 반려동물의 양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소유자 등의 적정한 양육·관리 의무, 반려동물 학대 금지, 등록 의무, 전달 방법, 반려동물 의료제도 개선, 보험 가입 노력 의무, 사전의무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음(제3장).

넷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와 관련하여, 반려동물의 행동분석·평가 및 훈련, 소유자 교육 등을 수행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 범위, 자격시험, 결격사유, 자격취소 및 명칭 사용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음(제4장).

다섯째, 반려동물 영업에 관하여,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장묘업 등의 허가·등록 제도, 영업자의 준수사항,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교육 의무,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폐쇄 등 관리·감독 체계를 규정하고 있음(제5장).

여섯째, 보칙으로서 국민의 동물복지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청문, 권한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제6장).

일곱째, 벌칙에서는 반려동물 학대, 무자격 영업, 명칭 도용 등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법률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제7장).

부칙에서는 이 법률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기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과의 관계 정비를 위한 경과조치 및 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을 함께 두고 있음.

이하에서는 제정안 입법 시 검토되어야 할 구체적인 주요 세부내용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제정안과 동물보호법 비교]

제정안	「동물보호법」
제1장 총칙	제1항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이념)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국민의 책무 등)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4조의2(동물보호의 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반려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장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반려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8조(반려동물복지위원회) 제9조(시·도 반려동물복지위원회)	제6조(동물복지종합계획) 제7조(동물복지위원회) 제8조(시·도 동물복지위원회)
제3장 반려동물의 양육 및 관리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제10조(적정한 양육·관리) 제11조(반려동물의 학대 금지) 제12조(반려동물의 관리 등) 제13조(반려동물의 전달방법) 제14조(반려동물 의료제도 개선 등) 제15조(사전의무교육)	제1절 동물의 보호 등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11조(동물의 운송) 제12조(반려동물의 전달방법) 제13조(동물의 도살방법) 제14조(동물의 수술)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제2절 맹견의 관리 등 제17조(맹견수입신고)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 제19조(맹견사육허가의 결격사유) 제20조(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등) 제21조(맹견의 관리) 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제23조(보험의 가입 등) 제24조(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제25조(비용부담 등) 제26조(기질평가위원회) 제27조(기질평가위원회의 권한 등) 제28조(기질평가에 필요한 정보의 요청 등) 제29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제3절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30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 제31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제32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 제33조(명의대여 금지 등)
	제4절 동물의 구조 등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 제3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제36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제37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 제38조(시정명령 및 시설폐쇄 등) 제39조(신고 등) 제40조(공고) 제41조(동물의 반환 등) 제42조(보호비용의 부담) 제43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제44조(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제45조(동물의 기증·분양) 제46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제4장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4장 동물실험의 관리 등
제16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 제17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제18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 제19조(명의대여 금지 등)	제47조(동물실험의 원칙) 제48조(전임수의사) 제49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제50조(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 제51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52조(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정 등) 제53조(윤리위원회의 구성) 제54조(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제55조(심의 후 감독) 제56조(전문위원의 지정 및 검토) 제57조(윤리위원회 위원 및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58조(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감독)
	제5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5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60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61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62조(인증농장의 표시) 제63조(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제64조(인증농장에 대한 지원 등) 제65조(인증취소 등) 제66조(사후관리) 제67조(부정행위의 금지) 제68조(인증의 승계)
제5장 반려동물 영업	제6장 반려동물 영업
제20조(영업의 허가) 제21조(맹견취급영업의 특례) 제22조(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제23조(동물장묘시설의 설치 제한) 제24조(장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25조(영업의 등록) 제26조(허가 또는 등록의 결격사유) 제27조(영업승계) 제28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제29조(직권말소) 제30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31조(등록대상동물의 판매에 따른 등록신청)	제69조(영업의 허가) 제70조(맹견취급영업의 특례) 제71조(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제72조(동물장묘시설의 설치 제한) 제72조의2(장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73조(영업의 등록) 제74조(허가 또는 등록의 결격사유) 제75조(영업승계) 제76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제77조(직권말소)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79조(등록대상동물의 판매에 따른

제32조(거래내역의 신고) 제33조(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제34조(교육) 제35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등) 제36조(과징금의 부과) 제37조(영업장의 폐쇄)	등록신청) 제80조(거래내역의 신고) 제81조(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제82조(교육) 제83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등) 제84조(과징금의 부과) 제85조(영업장의 폐쇄)
제6장 보칙	제7장 보칙
제38조(교육 및 홍보) 제39조(청문)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제86조(출입·검사 등) 제87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제88조(동물보호관) 제89조(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제90조(명예동물보호관) 제91조(수수료) 제92조(청문) 제93조(권한의 위임·위탁) 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제95조(동물보호정보의 수집 및 활용) 제96조(위반사실의 공표)
제7장 벌칙	제8장 벌칙
제41조(벌칙) 제42조(과태료)	제97조(벌칙) 제98조(벌칙) 제99조(양벌규정) 제100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101조(과태료)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영업의 허가·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1조(시행일) 제2조(맹견수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사육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윤리위원회 변경심의, 심의 후 감독 및 전문위원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5조(결격사유의 적용례) 제6조(동물처리계획서에 관한 적용례)

	제7조(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의 동물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8조(거래내역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동물복지종합계획 및 동물복지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동물복지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맹견사육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맹견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동물보호센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보호비용의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동물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윤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교육이수에 관한 규정의 경과조치) 제20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동물보호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동물학대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조례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2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

3. 주요항목별 검토

(1) 목적 및 정의

제정안은 반려동물을 생명과 존중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며, 반려동물, 반려동물복지, 소유자등, 맹견 및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 주요 개념을 정의하고 있음(안 제1조 및 제2조).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반려동물의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을 생명과 존중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복지”란 반려동물의 생애 전반에 걸쳐 생명 존중과 보호 및 복지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사람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제도적 지원을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반려동물을 소유하거나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양육·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맹견”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를 말한다.
5. “반려동물행동지도사”란 반려동물의 행동분석·평가 및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제정안은 반려동물을 생명과 존중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등 반려동물 복지에 관한 기본적 가치와 방향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향후 관련 정책 수립과 제도 운영의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의 목적 규정은 보호 대상을 반려동물로 한정된 점을 제외하면, 그 취지와 규율 방향에 있어 현행 「동물보호법」의 목적 규정과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임. 또한 제정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반려동물, 소유자등, 맹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의 개념은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새롭게 도입한 ‘반려동물복지’ 개념 역시 현행법상 적정 사육·관리, 학대 방지, 구조·보호 및 동물복지 정책 추진체계와 유사함.

이와 같이 유사한 개념과 규율 체계를 별도의 법률로 다시 구성할 경우, 법률 간 기능 구분이 불명확해지고, 법 적용 및 행정 집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반려동물복지의 기본이념 및 국가·국민의 책무 규정

제정안은 반려동물을 생명과 존중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반려동물의 복지를 증진하여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구현하려는 기본이념을 규정하는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 정 안
제3조(기본이념) 이 법은 반려동물을 생명과 존중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품종·성별·연령 및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생애 전반에 걸쳐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려동물 학대 방지와 반려동물의 보호·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반려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와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국민의 책무 등) ① 모든 국민은 반려동물을 생명으로서 존중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려동물복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의 보호·복지 증진과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반려동물의 복지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정안은 반려동물 복지에 관한 기본이념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시함으로써 반려동물 복지 정책의 기본적 방향과 적용 기준을 보다 분명히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반려동물은 현행 「동물보호법」상 이미 동물에 포함되어 보호·학대 방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원칙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가 규정²⁾되어 있는바, 반려동물 복지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려는 경우에는 현행 제도와 구별되는 규율 대상과 기능, 제정의 실질적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설명될 필요가 있음.

특히 제정안은 기본법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반려동물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본법의 성격과 일반적인 법률 적용 원칙에 비추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따라서, 반려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현행 「동물보호법」과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거나, 우선 적용 규정을 삭제·완화하는 등 법률 간 적용 관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동물보호법」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등

[법률 간 적용 관계를 규정한 주요 입법례]

○ 기본법의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특별법/특례법의 경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개의 식용 종식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우선 적용한다.

○ 기타(일반법)

<동물보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동물의 보호 및 이용·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실험동물의 사용 또는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동물보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간호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간호사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른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의 내용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보유동물의 전시, 관리, 보호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3) 반려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반려동물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반려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라 시·도 단위의 반려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반려동물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려동물복지위원회 및 시·도 반려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 정 안
제2장 반려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반려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반려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2. 반려동물의 보호·복지 증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을 보호·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의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동물의 보호·복지 관련 대국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종합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방안 8. 그 밖에 반려동물의 보호·관리 및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제 정 안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반려동물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반려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반려동물복지위원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려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1호는 심의사항으로 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복지정책의 수립, 집행, 조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중 반려동물의 보호·복지와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반려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호선(互選)된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의 보호·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반려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반려동물복지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

제 정 안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시·도 반려동물복지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시·도 단위의 반려동물복지계획의 수립과 반려동물의 적절한 보호·복지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시·도 반려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도에 반려동물복지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반려동물복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시·도 반려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반려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 시·도 단위 계획과 반려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반려동물에 특화된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현행 「동물보호법」 역시 5년 단위의 동물복지종합계획과 동물복지위원회를 통해 반려동물 복지를 포함한 동물복지 정책 전반을

규율하고 있으며, 계획의 구성 요소와 추진 체계 또한 제정안과 상당 부분 유사함.

[종합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비교]

동물보호법(제6조)	반려동물복지기본법안(안 제7조)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반려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동물의 보호·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반려동물의 보호·복지 증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반려동물을 보호·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관한 사항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관한 사항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	-
동물의 보호·복지 관련 대국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동물의 보호·복지 관련 대국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방안	종합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방안
그 밖에 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반려동물의 보호·관리 및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에 한정된 별도의 계획과 위원회를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것이 정책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적 일관성 측면에서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특히 반려동물복지 종합계획과 현행 동물복지종합계획 간의 관계, 그리고 반려동물복지위원회와 기존 동물복지위원회 간의 기능 분담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정책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행정안전부는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에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반려동물복지 관련 심의·자문 기능은 현행 동물복지위원회를 활용하거나 분과위원회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³⁾

또한, 대한수의사회는 제정안에 포함된 반려동물 의료제도 개선 사항이 이미 「수의사법」에 따른⁴⁾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에서 규율되고 있는 영역인 점을 들어, 이를 별도의 반려동물 복지 계획에 다시 포함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임.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수의사법> 제3조의2(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의료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동물의료 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동물의료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안

4. 동물의료기술의 향상과 지원 방안

5. 그 밖에 동물의료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의 양육 및 관리

제정안은 반려동물의 유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반려동물 소유자 등에게 적정한 사육·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제 정 안
제3장 반려동물의 양육 및 관리 제10조(적정한 양육·관리) ①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등은 재난 시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반려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반려동물의 학대 금지) ①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절한 길이의 목줄,

제 정 안

위생·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3.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제12조(반려동물의 관리 등)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려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반려동물의 전달방법)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자는 직접 전달하거나 제25조에 따른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제14조(반려동물 의료제도 개선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의료제도 개선과 정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의 보험가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반려동물 소유자등이 부담하는 동물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소유자등은 자신의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사전의무교육) 반려동물을 소유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반려동물 양육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정안은 반려동물 소유자등에게 기본적인 사육·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유기 및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반려동물 등록과 전달 방식의 제한,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국가의 시책, 보험가입 및 사전의무교육 제도 등을 규정하여 반려동물 양육 전반에 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도 사육·관리, 학대·유기 방지, 등록, 교육 및 보험⁵⁾ 등에 관한 기본 제도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바, 제정안은 기존 제도와의 관계를 전제로 역할과 규율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특히 학대·유기 규율을 반려동물과 그 외 동물로 분리할 경우 법체계의 일관성과 수범자 인식 측면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소유자등’ 개념을 전제로 소유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까지 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 부담을 과도하게 확대할 소지가 있으므로, 등록의무 주체는 원칙적으로 소유자로 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아울러 등록 대상 확대⁶⁾, 등록 제외지역 폐지, 보험료 지원 및 사전 의무교육 등은 행정·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인 만큼, 제도의 단계적 도입과 구체적인 집행 기준 마련이 요구될 것으로 보임.

5) 「동물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82조(교육), 제23조(보험의 가입 등)

6)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동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시행령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로 한정하고 있음(「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 시행령 제4조).

(5)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정안은 반려동물의 행동 분석·평가 및 훈련, 반려동물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를 도입하고, 자격시험을 통해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관리하려는 것임(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 정 안
제4장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16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 ①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
2. 반려동물에 대한 훈련
3. 반려동물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반려동물행동지도에 필요한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①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반려동물의 행동분석·평가 및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었

제 정 안

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1. 제3항에 따라 시험의 무효 또는 합격 결정의 취소를 받은 사람
2. 제18조제2항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

제 정 안

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4.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6. 영리를 목적으로 반려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알선·유인하거나 강요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명의대여 금지 등) ① 제17조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정안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 자격시험 및 관리 규정을 도입하여 자격제도의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이미 자격을 취득한 자의 지위, 자격 효력의 유지, 행정처분 이력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가 마련 되어 있지 않아, 자격의 연속성과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함.

또한 자격시험·보수교육·자격 취소·정지 등 기존 운영 체계가 삭제·이관되는 과정에서 시행 시점, 위탁기관의 법적 지위, 진행 중인 행정 절차 처리 기준 등에 대한 혼선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요구됨.

한편 결격사유 중 정신질환자 관련 규정(안 제18조제1항제2호)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존 권고와 「정신건강복지법」상 차별대우 금지 원칙,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제시된 바 있으므로, 직무 수행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반려동물 영업 허가·등록

제정안은 반려동물 생산·수입·판매·장묘업을 허가 대상으로, 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업을 등록 대상으로 규율하고, 시설·인력 기준, 결격사유, 영업승계, 휴·폐업 및 직권말소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있음(안 제20조부터 제29조까지).

제 정 안
제5장 반려동물 영업
제20조(영업의 허가) ① 반려동물(이하 이 장에서 “동물”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동물생산업
2. 동물수입업
3. 동물판매업
4. 동물장묘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 정 안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맹견취급영업의 특례) ① 제2조제4호에 따른 맹견을 생산·수입 또는 판매(이하 “취급”이라 한다)하는营业을 하려는 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또는 동물판매업의 허가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맹견 취급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이하 “맹견취급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맹견취급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③ 맹견취급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맹견을 번식시킨 경우
2. 맹견을 수입한 경우
3. 맹견을 양도하거나 양수한 경우
4. 보유하고 있는 맹견이 죽은 경우

④ 맹견 취급을 위한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또는 동물판매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제20조제3항에 따른 기준 외에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이하 “공설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제 정 안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및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동물장묘시설의 설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제20조제1항제4호의 동물장묘업을 영위하기 위한 동물장묘시설 및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내. 다만, 해당 지역의 위치 또는 지형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제24조(장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장묘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동물장묘시설 이용·관리의 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장묘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장묘정보시스템의 기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장묘시설의 현황 및 가격 정보 제공

제 정 안

2. 동물장묘절차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장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영업의 등록) ①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동물전시업

2. 동물위탁관리업

3. 동물미용업

4. 동물운송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영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허가 또는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제 정 안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

5.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6.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제1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27조(영업승계)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그营业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 등”이라 한다)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제 정 안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2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① 영업자가 휴업, 폐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동물장묘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 30일 전에 보유하고 있는 동물의 적절한 사육 및 처리를 위한 계획서(이하 “동물처리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업자는 동물처리계획서에 따라 동물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처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물처리계획서의 제출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직권말소)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

제 정 안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영업을 폐업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정안은 반려동물 영업의 허가·등록 사항을 규정하여 생산·판매 등 영업 단계에서 일정한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반려동물 복지 및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제정안의 관련 규정은 현행 「동물보호법」 제69조부터 제77조까지의 반려동물 영업 규정을 기본적인 틀과 내용을 대부분 유지한 채 재구성한 것으로, 허가·등록 범위나 규제 방식에서 본질적인 차별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시설·인력 기준 등 주요 사항 역시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어 규율 방식 전반은 현행 체계를 벗어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에 대한 차별화된 법률 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동물복지의 기본 원칙과 국가의 책임은 농장동물·실험동물 등 모든 동물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CCTV 설치 의무, 출입·검사, 수수료 부과 등 현행 「동물보호법」 상

동물영업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제 사항은 동일한 법체계 내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제도의 일관성과 집행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

(7) 반려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신고 및 교육

제정안은 반려동물 영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신청 및 거래내역 신고,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영업자 교육 의무 등을 규정하여 반려동물 영업 단계 전반을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제 정 안
제30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것 2.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동물병원과의 적절한 연계를 확보할 것 3.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하지 아니할 것 4. 동물의 번식, 반입·반출 등의 기록 및 관리를 하고 이를 보관할 것 5. 동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영업허가번호 또는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할 것 6. 동물의 분뇨, 사체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7.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준수할 것 8. 제34조제2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이수하고 그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 9.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의 취급 등에 관한 영업

제 정 안

실적을 보고할 것

10.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무(등록·변경신고방법 및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를 고지할 것

11. 다른 사람의 영업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여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도록 하지 아니할 것

② 동물생산업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고양이는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아니할 것

2. 약품 등을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동물의 발정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3. 동물의 특성에 따라 정기적으로 예방접종 및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기록할 것

③ 동물수입업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입의 내역을 신고할 것

2. 수입의 목적으로 신고한 사항과 다른 용도로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④ 동물판매업자(동물생산업자 및 동물수입업자가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월령이 2개월 미만인 개·고양이를 판매(알선 또는 중개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할 것

2. 동물을 판매 또는 전달을 하는 경우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자를

제 정 안

통하여 전달할 것

⑤ 동물장묘업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살아있는 동물을 처리(마취 등을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할 것
2. 등록대상동물의 사체를 처리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것
3. 자신의 영업장에 있는 동물장묘시설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지 아니할 것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그 밖에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등록대상동물의 판매에 따른 등록신청) ①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는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구매자(영업자를 제외한다)에게 동물등록의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의 명의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신청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제32조(거래내역의 신고) ①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

제 정 안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거래내역을 「동물보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보호 및 동물영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영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교육)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에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영업자는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제3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제2항의 정기 교육 외에 동물의 보호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추가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제 정 안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종류, 내용, 시기, 이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반려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거래 관리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업 과정에서의 기본적인 관리 기준을 법률 차원에서 정비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제정안의 해당 규정은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 영업 규율체계를 기초로 구성되어 있어, 영업자 준수사항, 거래 관리, 교육 등 주요 내용은 현행 제도와 기본적인 틀을 같이하고 있음.

한편 대한수의사회는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중 정기적 예방접종 및 건강관리 의무(안 제30조제2항제3호)와 관련하여, 해당 의무가 「수의사법」상 무면허 진료행위 금지 규정과 혼동되지 않도록, 예방접종 및 건강관리의 주체가 ‘수의사’임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8) 반려동물 영업 관리체계

제정안은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행정제재 체계를 정비하여,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영업장 폐쇄 등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 정 안
제35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동물보호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허가를 받은 날 또는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营业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0조제1항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 사항과 다른 방식으로營業을 한 경우 6. 제20조제4항 또는 제25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 정 안

7. 제20조제3항 또는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8. 제23조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곳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한 경우
9.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0. 제3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동물을 양도하게 하는 등 적절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처분의 절차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과징금의 부과)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35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처분이 해당 영업의 동물 또는 이용자에게 곤란을 주거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

제 정 안

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영업의 규모, 위반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장의 폐쇄)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영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폐쇄하게 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2. 제35조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营业을 한 때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장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제 정 안

2. 해당 영업장이 적법한 영업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쇄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폐쇄조치의 일시·장소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 등을 미리 해당 영업을 하는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폐쇄하는 경우 해당 영업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동물을 양도하게 하는 등 적절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영업장 폐쇄의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행정제재 체계를 정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단계적 제재와 실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제정안의 관련 규정은 현행 「동물보호법」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에 규정된 영업 제재 규정을 이관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제재 사유, 처분 유형, 과징금 상한(1억원), 영업장 폐쇄 요건 및 절차 등 주요 내용은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고 있음.

(9) 보칙 및 벌칙

제정안은 반려동물복지기본법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적·행정적 사항과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율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청문, 권한의 위임·위탁 등 보칙 규정과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 정 안
제6장 보칙
제38조(교육 및 홍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동물복지 인식을 제고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사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9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2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취소
2. 제35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영업등록의 취소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 및 반려동물복지 진흥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농림축산 또는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

제 정 안

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한 업무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통보하거나 그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41조(벌칙) ① 제11조제3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호를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2. 제11조제2호를 위반한 소유자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또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명

제 정 안
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④ 제11조제1호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과태료) 제13조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전달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정안의 청문(안 제39조) 및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40조)은 현행 「동물보호법」 제92조 및 제93조⁷⁾에 따른 규정을 이관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청문 대상 처분의 범위, 위임·위탁의 절차와 범위, 위탁기관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비용 지원 근거 등은 종전 법률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

교육·홍보(안 제38조)는 반려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제고와 성숙한

7) 「**동물보호법**」 제92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맹견사육허가의 철회
2. 제32조제2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취소
3. 제36조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취소
4. 제38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시설폐쇄
5. 제61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6. 제6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취소
7. 제83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영업등록의 취소

제9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 및 동물복지 진흥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농림축산 또는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한 업무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통보하거나 그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동물복지 교육·홍보는 반려동물에 한정되기보다는 모든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성격의 사항인바, 이를 별도의 반려동물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규율하기보다는 현행 「동물보호법」 등 포괄적인 법체계 내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벌칙 및 과태료(안 제41조 및 제42조)는 현행 「동물보호법」의 벌칙·질서벌 규정 중 제정안에서 규율하는 위반행위를 중심으로 이관하여 구성한 것으로, 구성요건과 처벌 수위, 과태료 상한액 등은 종전 규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

다만, 제정안으로 일부 의무 규정이 이관되었음에도 이에 대응하는 벌칙·과태료 규정은 함께 정비되지 않았음. 구체적으로 동물영업의 허가·등록 등 영업 운영에 관한 의무(안 제20조부터 제29조까지)와 반려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및 학대 금지 의무(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제정안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은 「동물보호법」에 남아있음.⁸⁾ 이로 인해 제정안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가 불명확해 집행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반대로 「동물보호법」에는 대응되는 의무 규정 없이 제재 규정만 존치되는 구조가 발생할

8) 예를 들면,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은 「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에, 반려동물 전달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101조제3항제3호에 각각 규정되어 있음.

수 있음. 따라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의무 규정의 이관 여부에 맞추어 제재 규정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음.

(11) 부칙

제정안 부칙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으로 정하고 있으며(부칙 제1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동물보호법」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절차 및 영업 허가·등록의 효력을 제정안에 따른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부칙 제2조 및 제3조). 또한 다른 법률의 개정에서는 제정안 시행에 따라 「동물보호법」 등 관계 법률의 관련 규정을 삭제·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부칙 제4조).

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동물보호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영업의 허가·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동물보호법」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았거나营业을 등록한 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및 같은 조 제11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4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 정 안

제12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를 삭제한다.

제35조제3항제6호 중 “반려동물”을 “「반려동물복지기본법」에 따른 반려동물”로 한다.

제69조부터 제85조까지를 삭제한다.

제9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제97조제3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② 동물위생시험소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을 “「반려동물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반려동물”로 한다.

③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바목 중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을 “「반려동물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정안은 부칙을 통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유예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동물보호법」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절차 및 영업 허가·등록의 효력을 제정안에 따른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제정안 시행에 따라 「동물보호법」 등 관계 법률의 관련 규정을 삭제·정비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일반적으로 다른 법률에서 인용 조문이나 용어를 정비할 필요

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칙에 ‘다른 법률의 개정’ 규정을 두는 방식이 활용되는바, 이는 해당 법률의 실체적 규율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정안은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실체적으로 규율하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및 반려동물 영업 관련 규정을 부칙에 의한 일괄 삭제 방식으로 이관하고 있어, 단순한 인용 정비를 넘어 규율 대상과 내용을 변경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는 부칙에 의한 타법개정 방식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법체계의 명확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이에 실체 규정을 삭제·이관하려는 경우에는 부칙 방식보다는 「동물보호법」을 직접 개정하는 입법조치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반려동물행동지도사와 같이 종전 법률에 따라 이미 형성된 자격·권한이 제정안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자격의 인정과 행정절차 및 제재의 효력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25

참고1

제정안 및 「동물보호법」 상 이관 조문(다른 법률의 개정)

조	조 제목	「동물보호법」 과 비교
제2조	정의	- “반려동물” 정의(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정의(동물보호법 제2조제11호)
제7조	반려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	-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관한 사항”(동물보호법 제6조제1항제4호)
제11조	반려동물의 학대금지	-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동물보호법 제10조제4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제13조	반려동물의 전달방법	- 반려동물의 전달방법(제12조)
제16조~ 제19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 자격시험, 결격사유 등(동물보호법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20조~ 제37조	반려동물 영업	- 반려동물 영업(동물보호법 제69조부터 제85조까지)
제39조	청문	-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취소·영업허가 취소 청문(동물보호법 제9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7호)
제41조	벌칙	-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명칭 사용 등(동물보호법 제97조제3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비전	사람과 동물이 다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	
목표	◇ 동물 ‘보호’에서 적극적 ‘복지’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 사육금지제도 도입, 동물등록제 확대, 불법영업 관리강화 등 「동물복지법」 여건 조성 ◇ 학대·유기 예방 및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돌봄 강화 * 유산·유기 발생 : (‘23) 113천마리 → (‘29) 60천마리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를 ‘29년까지 현행 50% 수준으로 감축	
추진 과제	① 동물복지 안전망 강화	① 동물학대 예방 강화 ② 반려동물 유산·유기 방지 및 입양 활성화 ③ 농장동물 및 실험동물 관리시스템 개선 ④ 봉사동물 생애주기별 복지 증진 ⑤ 길고양이·실외사육견 복지개선, 관리 강화
	② 인프라 확충	① 동물복지 인력 및 조직 확충 ② 동물등록제 적용 대상 확대 ③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운영·관리 개선 ④ 민간 동물보호시설 개선 ⑤ 동물복지 R&D 기반 구축 및 전문인력 육성
	③ 반려문화 확산	① 동물복지 국민 캠페인 추진 ② 명예동물보호관 활성화 ③ 동물보호·복지 교육 확대 ④ 차질 없는 개식용 종식 이행 ⑤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④ 동물영업 및 의료 체계 개선 및 연관산업 육성	① 동물영업 관리 강화 및 이력관리 체계 구축 ② 동물의료 체계 및 인력 양성기반 정비 ③ 반려동물 연관산업 경쟁력 강화 ④ 동물장묘업 운영 합리화 ⑤ 반려동물 서비스업 제도개선
추진 체계	▶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과 협력체계 구축·강화 ▶ 동물복지법 체계 개편 추진	

참고 3

반려동물행동지도사 현황

- (추진배경) 반려견 양육 가구, 반려동물 행동 지도 전문인력 수요 확대 등에 따라 관련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가자격 신설

* '22년 관련 법 개정, '24년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실시

- (시험등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2등급**(1급과 2급)으로 구분

구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급
등급구분 기준	「동물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지도, 행동분석 및 평가,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	「동물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지도, 행동분석 및 평가,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
역할(예시)	기질평가위원, 특수목적견 훈련,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반려동물 행동지도 등	기질평가위원, 반려동물 입양전 교육, 동물보호센터 및 위탁관리 반려동물 행동지도

- (응시자격) 살아있는 동물을 안전하게 직접 다루어야 하는 점을 감안, **연령 및 실무경력**(1급 限) 등 일정 요건을 응시 자격으로 제한

- (1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급은 실무경력(2급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 10년 이상 등)을 갖춘 사람만 응시토록 경력 요건 부여
- (2급) 18세 이상